

유관기관 연락처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	044-200-5623~4	인증부표 제도운영
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	051-720-2581	인증부표 인증기관
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	02-2240-3231~2	인증부표 보급기관
KCL(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)	032-728-5579	인증부표 공인시험기관
KTR(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) 부산경남지원센터	051-464-0771	

지자체 담당자 연락처

부산시청 수산정책과	051-888-5391
인천시청 수산과	032-440-4874
울산시청 해양수산과	052-229-2982
경기도청 해양수산과	031-8008-4797
강원도환경해운본부 수산정책과	033-660-8344
충남도청 수산자원과	041-635-2772
전북도청 수산정책과	063-280-2672
전남도청 수산자원과	061-286-6923
경북도청 해양수산과	054-880-7724
경남도청 수산자원과	055-211-4024
제주도청 수산정책과	064-710-3242



2023 인증부표 계약업체

업체명	연락처	업체명	연락처
골든포우	02-566-1303	유림에코	055-755-1401
갯지애스	02-553-0664	이인	031-434-8172
광산글로벌	061-863-8884	이지이애스	0507-1350-1543
국제화학	061-373-4728	전진산업	054-956-1111
그린테크솔루션	031-355-5263	제이애스수지	061-323-6863~4
네이처머트리얼스	031-434-8254	젬마클린텍	054-337-4001
넥센	055-723-8508	주식회사 진일산업	051-264-1357
늘푸른산업	061-351-5014	주영테크	061-555-9200
대광	061-858-4101	중앙테크	054-973-8237
대산해양테크	070-7717-1834	지엠피산업(GMP산업)	055-633-0654
동남에코	055-673-6057	지오	055-649-3424
동흥	02-3445-2442	진일산업	051-264-1357
두니	070-4324-4947	천우	061-395-0734
디비테크	061-381-8247	천하테크	041-934-2606
명성정밀	055-343-7430	청강	055-574-1235
바른바다기술연구소	051-988-7033	청원해양	061-542-7024
비온드오션	070-7514-5528	케이비피(KBP)	055-326-5666
삼우테크	031-571-3536	코리아엑티	032-819-1681
삼해왕	02-579-8833	코부이테크	061-461-0510
세영	061-863-0101	코스파	070-4347-3327
수정수지	061-464-7501	태광	055-674-7690
신세계씨월드	055-944-7400	태광부표	055-674-7690
신영플라텍	055-574-9282	태성산업	061-858-2588
씨라이프	043-544-4947	태양케미칼	055-345-7000
아주와이어	041-547-8547	파시텍	02-838-5556
알루부이	055-4888-4171~5	포리폼	041-621-2020
에어퍼펙트	02-783-5400	해선	061-553-0003
엔에스인더스트리	070-7744-9867	해성마린	055-646-8486
엔피씨	031-361-8673	해신해양	051-974-1006
엘엔에스글로벌	070-8095-3588	해원	061-537-3300
연우케미칼	061-863-5888	혁신	061-462-5948
영도플라텍	062-943-0153		

2023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종합안내

인증부표, **선택**이 아니라 **필수**입니다.



2023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종합안내



자재사업부 02-2240-3232
(05510)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



01 2023년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안내

- 인증 부표란?**
 - 해양수산부 「인증부표 보급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라 인증부표 품질인증서가 발급된 부표
- 목적**
 - 인증부표 보급을 통해 어장의 발포폴리스티렌(EPS, 스티로폼)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
- 지원 대상**
 - 양식어장 등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티렌(EPS, 스티로폼)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
 - 발포폴리스티렌(EPS)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, 설치하는 양식시설, 어장 시설(정치망 등 부표), 어선 어구(구획어업 등), 양식장 뗏목 순

▼ 인증부표 지원 기준

구분	양식대상	비고
발포되지 않은 부표	- 모든 양식장 (이종(異種)으로 재질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한 지양)	-
발포 폴리프로필렌(EPP) 및 발포 폴리에틸렌 부표(EPE)	- 김 등 뒤집기 작업을 필요로 하는 해조류 양식 (뒤집기 작업용에 한함) - 어류·전복 가두리와 양식장 뗏목(100L 이상)	-
발포 폴리프로필렌(EPP) 및 발포 폴리에틸렌(EPE)에 동일 재질로 코팅·피복된 부표*	- 모든 양식장	-
발포 폴리프로필렌(EPP) 및 발포 폴리에틸렌(EPE)에 다른 재질로 코팅·피복된 부표	- 어류·전복 가두리와 양식장 뗏목(100L 이상)	-
발포폴리스티렌(EPS)에 코팅·피복한 부표**	- 어류·전복 가두리와 양식장 뗏목(100L 이상)	하반기 철회

* 발포 피복부표의 피복재는 내부 발포재와의 재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다른 재질로 하지 않고 동일한 재질로 이루어진 부표여야 함. 단, EPS 포함 부표는 다른 재질로 피복재 사용 가능.
** 「어장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조의 시행(’23.11.13.)에 따라 ’23년 하반기 품질인증위원회부터 발포폴리스티렌(EPS) 재질을 포함한 부표는 인증하지 않으며, 기존의 인증도 철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
02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제한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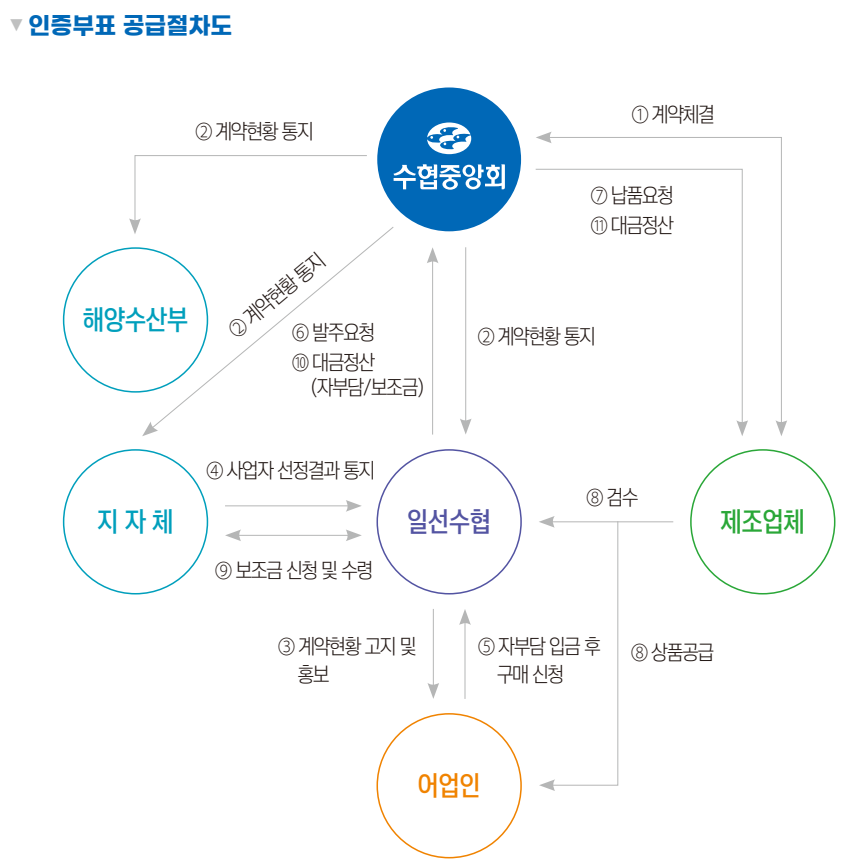
2023년 11월 13일부터 모든 양식장 등 어장에 발포폴리스티렌(EPS, 스티로폼) 부표를 신규 설치할 수 없습니다.

「어장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조
과태료 최대 200만원



스티로폼 부표 설치 제한

- 지원 형태**
 - 지원조건 : 국고 35% 지방비 35% 자부담 30%
- 사업 신청**
 -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사업관리주체(관할 시·군·구)에게 제출



03 보조금 부정 수급 안돼요!



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


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
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



자부담 회피, 대납

10년 이하 징역, 보조금 반환, 제재부가금 500%, 모든 보조금 지급 제한 5년

▼ 관계법령

법률	유형	처분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	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·지급 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·지급	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	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·지급 받은 경우	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율 500%
	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	지급 제한 기간 5년
형법	사기 *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②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	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